

Q) 노인인권이란?

먼저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을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를 뜻합니다.

Q)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된 모든 자가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하는 권리를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기준

노인인권보호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설명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어르신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어르신이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르신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기관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 직원은 어르신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만약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어르신의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5.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p>③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기관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하여서는 안 된다.
<p>④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p>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직원은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p>⑥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2.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3.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p>⑦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p>⑧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은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p>⑨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등 제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어르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어르신 또는 가족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어르신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5.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해지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어르신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 종결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